

7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전주시가 2020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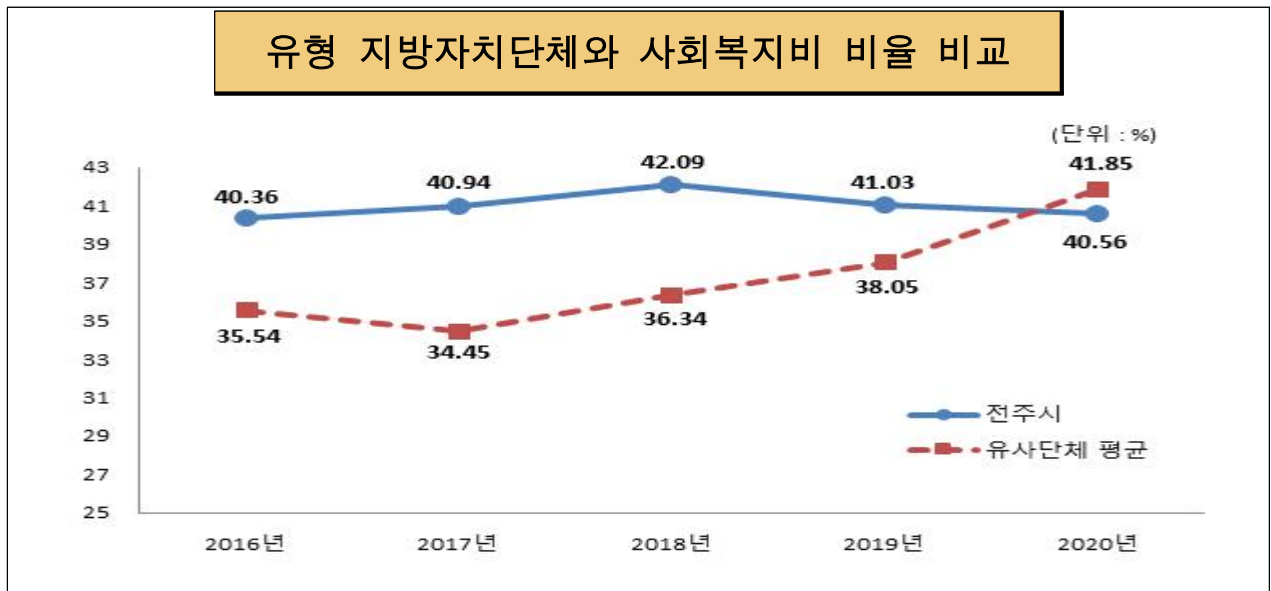
구분	합계	기초생활 보장 (081)	취약계층 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계	845,790	173,906	78,044	276,771	275,937	37,373	3,722	0	34
국비	505,398	117,408	45,016	161,894	155,713	25,351	15	0	0
시·도비	110,439	8,422	10,214	60,173	28,084	2,790	755	0	0
시·군·구비	229,953	48,076	22,814	54,704	92,140	9,232	2,952	0	3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A)	1,163,247	1,255,417	1,386,330	1,654,815	2,085,056
사회복지분야(B)	469,525	513,954	583,446	678,911	845,789
사회복지분야비율(B/A)	40.36	40.94	42.09	41.03	40.56
인구수(C)	651,744	648,964	651,091	654,394	657,432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720	792	896	1,037	1,287



☞ 세출분야 중 사회복지비가 40.56%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 시설 등 사회복지분야 정책 확대에 따라 사회복지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전주시의 민간(개인 또는 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자원으로 지원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2,128,181	169,522	7.97%	
민간경상보조 (307-02)		45,189	2.12%	
민간단체운영비보조(307-03)		4,393	0.21%	
민간행사보조 (307-04)		2,161	0.1%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37,989	1.79%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73,687	3.46%	
민간자본보조 (402-01)		6,103	0.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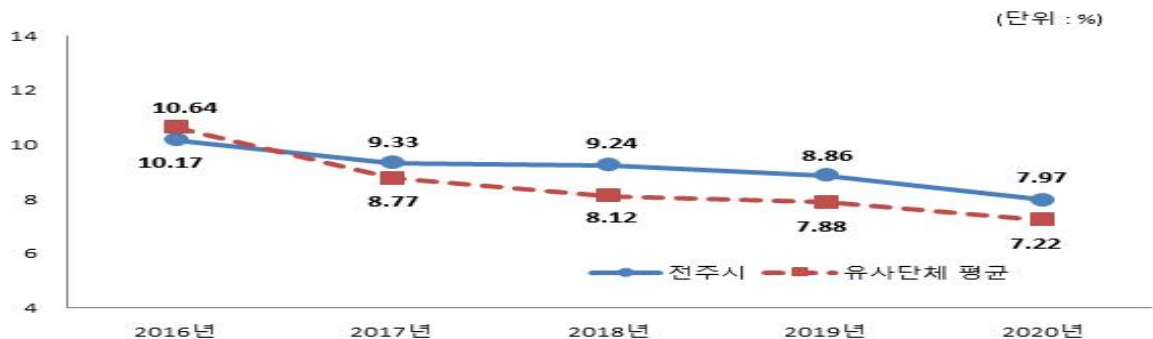
-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2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1,163,247	1,255,417	1,422,796	1,694,409	2,128,181
지방보조금(민간)	118,327	117,142	131,395	150,172	169,522
비율	10.17%	9.33%	9.24%	8.86%	7.97%

지방보조금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회계연도 결산서 기준)

◆ 2020년도 지방보조금(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집행내역 : 별지 1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전주시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0년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 별지 2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 해당없음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 해당없음

■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7-6. 행사·축제경비

☐ 다음은 우리 전주시가 2020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2,085,056	4,932	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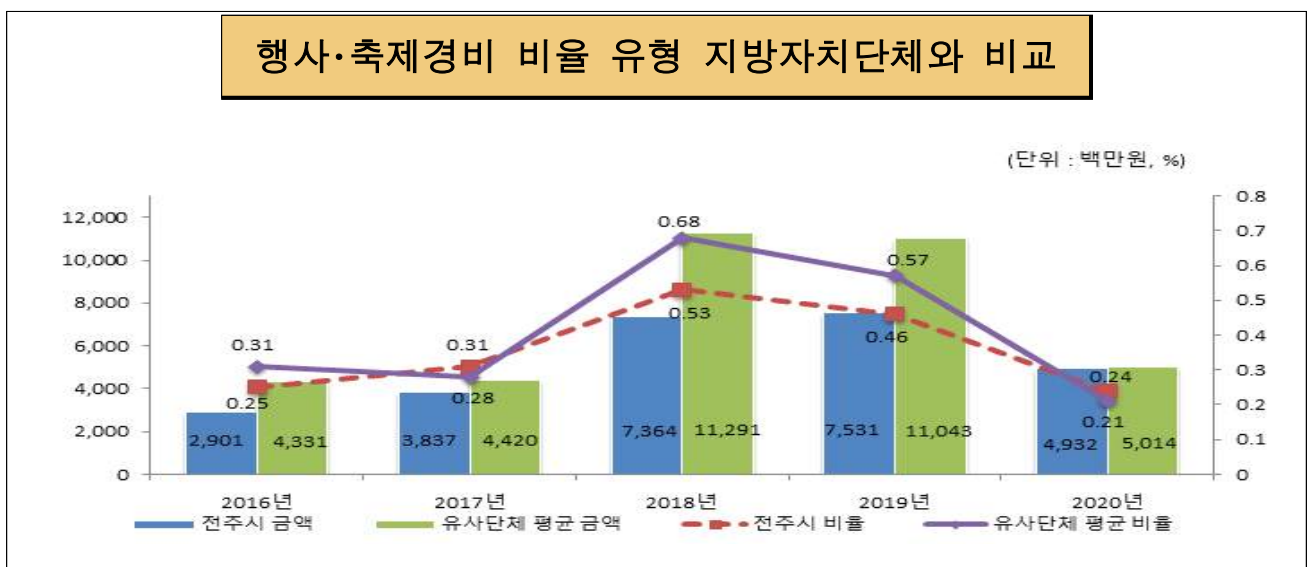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1,163,247	1,255,417	1,386,330	1,654,815	2,085,056
행사·축제경비	2,901	3,837	7,364	7,531	4,932
비율	0.25%	0.31%	0.53%	0.46%	0.24%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